

광주지방법원 2021. 4. 13 선고 2021가단148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4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2. 1. 23. 접수 제244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(무변론 판결)

판사유효영

별지